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2017. 6. 23.)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 동 현]

목 차

| | |
|-------------------------|----|
| I. 검토경과 | 1 |
| II. 제출근거 | 1 |
| I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
| 1. 결산총괄 | 1 |
| 2. 세입결산 | 2 |
| 3. 세출결산 | 2 |
| 4. 세입·세출 처리상황 | 2 |
| 5. 일반회계 세입결산 | 3 |
| 6. 일반회계 세출결산 | 3 |
|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5 |
|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 6 |
| 9. 계속비 결산 | 7 |
| 10. 예비비 지출 | 8 |
|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 9 |
| IV. 기금결산 | 10 |
| V. 채권액결산 | 11 |
| VI. 채무액결산 | 12 |
| VII. 보조금결산 | 12 |
| VIII. 기타의견 | 13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7. 6. 2.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7. 6. 8.
- 의안번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제2017~77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제2017~76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의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19)

(단위: 백만원)

| 회계별 | 예산현액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차인잔액 (이월액) |
|------|---------|---------|---------|---------------|
| 합 계 | 577,120 | 590,059 | 400,371 | 189,688 |
| 일반회계 | 511,522 | 523,685 | 369,344 | 154,341 |
| 특별회계 | 65,598 | 66,374 | 31,027 | 35,347 |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미수납액 (B-C) | 미수납액 처리 | | 비율(%) | |
|------|-------------|--------------|------------|---------------|---------|-------|-------|------|
| | | | | | 결손처분 | 이월 | C/A | C/B |
| 계 | 577,120 | 594,378 | 590,059 | 4,319 | 294 | 4,025 | 102.2 | 99.3 |
| 일반회계 | 511,522 | 527,141 | 523,685 | 3,456 | 281 | 3,175 | 102.4 | 99.3 |
| 특별회계 | 65,598 | 67,237 | 66,374 | 863 | 13 | 850 | 101.2 | 98.7 |

3. 세출결산(결산서 p33)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A) | 예산성립 후증감액 (B) | 예산현액 (C)=A+B | 지출원인 위액 (D) | 지출액 (E) | 다음연도 이월액 (F) | 집행잔액 $G=C-E-F$ | 불용비율 G/C (%) |
|------|------------|---------------------|-----------------|-------------------|------------|--------------------|-------------------|--------------------|
| 계 | 496,609 | 80,511 | 577,120 | 451,879 | 400,371 | 76,851 | 99,898 | 17.3 |
| 일반회계 | 436,414 | 75,108 | 511,522 | 417,019 | 369,344 | 70,625 | 71,553 | 13.9 |
| 특별회계 | 60,195 | 5,403 | 65,598 | 34,860 | 31,027 | 6,226 | 28,345 | 43.2 |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5)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입 결산액 (A) | 세출 결산액 (B) | 차인잔액 (A-B) | 다음연도 이월액 | | | | |
|------|------------------|------------------|---------------|----------|----------|-----------|-------------|------------|
| | | |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계속비 이월 | 보조금 사용잔액 | 순세계 잉여금 |
| 계 | 590,059 | 400,371 | 189,688 | 38,022 | 28,969 | 8,768 | 4,892 | 109,037 |
| 일반회계 | 523,685 | 369,344 | 154,341 | 36,336 | 24,640 | 8,756 | 4,879 | 79,730 |
| 특별회계 | 66,374 | 31,027 | 35,347 | 1,686 | 4,329 | 12 | 13 | 29,307 |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0)

(단위: 백만원)

| 과 목 | 구 분 | 징수결정액 (A) | 수 납 액 (B) | 미수납액 (C) | 미수납액처리 | | 비율 B/A |
|------------------|-------|--------------|--------------|-------------|--------|-------|-----------|
| | | | | | 결손처분 | 익년도이월 | |
| 계 | | 527,141 | 523,685 | 3,456 | 281 | 3,175 | 99.3 |
| 지방세 | | 25,273 | 24,112 | 1,161 | 131 | 1,030 | 95.4 |
| 세외수입 | | 18,428 | 16,133 | 2,295 | 150 | 2,145 | 87.5 |
| | 경세외수입 | 6,922 | 6,916 | 6 | 0 | 6 | 99.9 |
| | 임세외수입 | 11,506 | 9,217 | 2,289 | 150 | 2,139 | 80.1 |
| 지방교부세 | | 188,705 | 188,705 | | | | 100.0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18,798 | 18,798 | | | | 100.0 |
| 보조금 | | 142,646 | 142,646 | | | | 100.0 |
| 보전수입등 | | 133,291 | 133,291 | | | | 100.0 |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65)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A)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B) | 이월액(C) | 불용액 (D=A-B-C) |
|---------|---------|-------------|---------|--------|------------------|
| 계 | 511,522 | 417,019 | 369,344 | 70,625 | 71,553 |
| 의회운영위원회 | 989 | 806 | 806 | | 183 |
| 총무위원회 | 241,843 | 186,915 | 182,054 | 8,526 | 51,263 |
| 산업건설위원회 | 268,690 | 229,298 | 186,484 | 62,099 | 20,107 |

○ 부서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합 계 | | 511,522 | 417,019 | 369,344 | 70,625 | 71,553 |
| 의 회 사 무 과 | | 989 | 806 | 806 | | 183 |
| 총 무 위원회 | 소 계 | 241,843 | 186,915 | 182,054 | 8,526 | 51,263 |
| | 기 획 감 사 실 | 45,790 | 8,223 | 8,213 | 10 | 37,567 |
| | 민 원 봉 사 실 | 606 | 546 | 546 | | 60 |
| | 행 정 과 | 60,037 | 54,139 | 54,129 | 31 | 5,877 |
| | 기 업 지 원 과 | 3,921 | 3,742 | 3,729 | | 192 |
| | 재 무 과 | 4,659 | 4,356 | 4,356 | 30 | 273 |
| | 복 지 정 책 과 | 86,214 | 79,836 | 76,490 | 5,473 | 4,251 |
| | 문 화 관 광 과 | 12,199 | 10,041 | 8,956 | 1,886 | 1,357 |
| | 보 건 소 | 8,019 | 7,013 | 7,013 | 550 | 456 |
| | 평 생 교 육 센 터 | 8,289 | 7,342 | 7,001 | 490 | 798 |
| | 체 육 시 설 사 업 소 | 3,852 | 3,605 | 3,605 | | 247 |
| | 읍 면 | 8,257 | 8,072 | 8,016 | 56 | 185 |
| | 산업건설 위원회 | 소 계 | 268,690 | 229,298 | 186,484 | 62,099 |
| 안 전 총 괄 과 | | 9,094 | 7,509 | 6,841 | 1,452 | 801 |
| 경 제 교 통 과 | | 15,834 | 13,070 | 12,839 | 882 | 2,113 |
| 산 림 과 | | 28,352 | 23,690 | 21,465 | 4,145 | 2,742 |
| 환 경 과 | | 19,670 | 17,130 | 14,151 | 5,168 | 351 |
| 건 설 과 | | 46,917 | 38,619 | 30,049 | 14,969 | 1,899 |
| 도 시 건 축 과 | | 48,886 | 36,819 | 21,383 | 20,678 | 6,825 |
| 농 업 기 술 센 터 | | 76,634 | 69,665 | 57,119 | 14,561 | 4,954 |
| 수 도 사 업 소 | | 22,441 | 21,983 | 21,824 | 244 | 373 |
| 거 창 사 건 관 리 소 사 업 소 | | 862 | 813 | 813 | 0 | 49 |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421)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미수납액 (C) | 미수납액처리 | | 비율 B/A |
|-----------------|--------------|------------|-------------|--------|-------|-----------|
| | | | | 결손처분 | 익년도이월 | |
| 계 | 67,237 | 66,374 | 863 | 13 | 850 | 98.7 |
| 공 기 업 | 33,768 | 33,518 | 250 | 0 | 250 | 99.3 |
| 의 료 보 호 기 금 | 779 | 779 | 0 | 0 | 0 | 100.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510 | 510 | 0 | 0 | 0 | 100.0 |
| 주 차 장 관 리 | 1,237 | 626 | 611 | 13 | 598 | 50.6 |
|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 6,340 | 6,340 | 0 | 0 | 0 | 100.0 |
| 수 질 개 선 | 5,181 | 5,181 | 0 | 0 | 0 | 100.0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708 | 708 | 0 | 0 | 0 | 100.0 |
| 기 반 시 설 | 56 | 56 | 0 | 0 | 0 | 100.0 |
| 농 업 발 전 기 금 | 18,658 | 18,656 | 2 | 0 | 2 | 99.9 |

○ 세 출(결산서 p421)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 (A)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B) | 이월액(C) | 불용액 (D=A-B-C) |
|-----------------|-------------|---------------|--------|--------|------------------|
| 계 | 65,598 | 34,860 | 31,027 | 6,226 | 28,345 |
| 공 기 업 | 32,062 | 21,877 | 19,012 | 4,885 | 8,165 |
| 의 료 보 호 기 금 | 780 | 778 | 778 | 0 | 2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507 | 144 | 144 | 363 | 0 |
| 주 차 장 관 리 | 610 | 227 | 227 | 0 | 383 |
|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 7,012 | 2,812 | 1,863 | 949 | 4,200 |
| 수 질 개 선 | 5,207 | 5,096 | 5,096 | 0 | 111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706 | 696 | 696 | 10 | 0 |
| 기 반 시 설 | 56 | 56 | 56 | 0 | 0 |
| 농 업 발 전 | 18,658 | 3,174 | 3,155 | 19 | 15,484 |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81)

□ 이 용(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82)

□ 전 용(일반회계): (결산서 p383)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전 용 금 액 | | 비 고 |
|-----|-----------|---------|---------|-----|
| | | 감 액 | 증 액 | |
| 15건 | 1,346,086 | 143,743 | 143,743 | |

※ 세부내역: 결산서(p383)

검 토 의 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노화산업 발전 포럼 행사 개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지도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변경, 직불사업 항목 및 대상 확대,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비 부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청소년 행사 지원, 청소년수련관 배치지도사 제수당 부족분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 (결산서 p385)

- 내역: 368건 52,214,428천원
-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 세부내역: 결산서(p385)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2016.7.20. 조례 제2328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16.7.26.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9. 계속비 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466)

(단위: 천원)

| 세부 사업명 | 총 투 자 액 | | | | 당 해 연 도 집 행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 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 잔액 |
| 합 계 | 118,667,596 | 67,174,733 | 51,477,130 | 15,733 | 25,828,338 | 15,788,323 | 10,034,742 | 5,273 |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4,952,199 | 3,438,829 | 1,505,248 | 8,122 | 965,927 | 582,604 | 378,050 | 5,273 |
|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 5,101,362 | 1,119,906 | 3,981,456 | 0 | 2,103,702 | 224,778 | 1,878,924 | 0 |
|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 3,468,447 | 1,265,879 | 2,202,568 | 0 | 1,820,128 | 986,007 | 834,121 | 0 |
| 거창향노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300,000 | 226,890 | 73,110 | 0 | 300,000 | 226,890 | 73,110 | 0 |
| 농촌테마공원 조성 | 18,807,208 | 8,534,344 | 10,272,864 | 0 | 4,428,687 | 3,460,872 | 967,815 | 0 |
| 소규모 용수개발 | 21,902,740 | 11,547,001 | 10,348,128 | 7,611 | 674,047 | 178,219 | 495,828 | 0 |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 37,266,664 | 22,957,574 | 14,309,090 | 0 | 6,097,887 | 4,071,788 | 2,026,099 | 0 |
| 권역단위종합정비 | 26,308,976 | 18,031,138 | 8,277,838 | 0 | 8,877,960 | 6,003,993 | 2,873,967 | 0 |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560,000 | 53,172 | 506,828 | 0 | 560,000 | 53,172 | 506,828 | 0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총 9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418)

(단위: 천원)

| 과 목 | | |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조 직 | 부 문 | 세부사업명 | | | | | |
| 합 계 | | | 686,600 | 400,709 | 683,640 | 0 | 2,960 |
| 문화관광과 | 관 광 | 수승대영업관리 | 285,000 | 0 | 282,931 | 0 | 2,069 |
| 건설과 | 지역및도시 | 주민편익사업 추진 | 380,000 | 380,000 | 380,000 | 0 | 0 |
| 건설과 | 수 자원 | 소하천 유지보수 | 21,600 | 20,709 | 20,709 | 0 | 891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예비비)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화관광과 수송대 영업관리는 수송대 물놀이 익사사고(2013.6.7.)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으로 지출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고, 건설과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은 수해피해 공공시설물 복구 지원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481)

(단위: 백만원)

| 구 분 | 건 수 | 예산현액 | 이월액 | 비 고 |
|-----------|-----|---------|--------|-----|
| 명 시 이 월 | 132 | 101,771 | 36,336 | |
| 사 고 이 월 | 115 | 93,564 | 24,755 | |
| 계 속 비 이 월 | 19 | 198,091 | 9,533 | |

검 토 의 견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사업자 선정 및 사전절차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유사사업과 연계추진,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사업대상지 미선정, 토지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IV 기금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517)

(단위: 천원)

| 구 분 기 금 명 | 전년도말 조성액(가)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 | | 당해연도말 조 성 액 (①=②+③) |
|--------------|----------------|---------------|---------|---------|---------------------------|
| | | 계①=②-④ | 조성액② | 사용액④ | |
| 계(7종) | 13,235,728 | 149,977 | 952,674 | 802,697 | 13,385,705 |
| 사 회 복 지 기 금 | 3,919,016 | 107,388 | 235,188 | 127,800 | 4,026,404 |
| 식 품 진 흥 기 금 | 49,654 | 15,907 | 18,907 | 3,000 | 65,561 |
| 재 난 관 리 기 금 | 823,996 | 60,144 | 512,198 | 452,054 | 884,140 |
| 중소기업육성기금 | 6,647,709 | △62,964 | 126,829 | 189,793 | 6,584,745 |
| 아름예술제진흥기금 | 500,270 | 48 | 8,048 | 8,000 | 500,318 |
| 옥외광고정비기금 | 208,229 | 26,990 | 29,040 | 2,050 | 235,219 |
| 체 육 진 흥 기 금 | 1,086,854 | 2,464 | 22,464 | 20,000 | 1,089,318 |

검 토 의 견

- 2016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조성액은 13,385,705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52,674천원이고, 사용액은 802,697천원으로 149,977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도 검토가 필요함.

V 채권액 결산(결산서 P625)

○ 회계별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 | 전년도말 현재액 | 당 해 연 도 발 생 액 | 당 해 연 도 소 멸 액 | 당해연도말 잔 액 |
|----------|--------|-------------|------------------|------------------|--------------|
| 합 계 | | 4,706,720 | 234,001 | 56,747 | 4,883,974 |
| 일반 회계 | 소 계 | 4,355,826 | 133,000 | - | 4,488,826 |
| | 전화선예치금 | 12,474 | - | - | 12,474 |
| | 학자 대여금 | 4,343,352 | - | - | 4,343,352 |
| | 회 원 권 | - | 133,000 | - | 133,000 |
| 특별 회계 | 농업발전기금 | 5,250 | - | - | 5,250 |
| 기금 | 사회복지기금 | 345,644 | 101,001 | 56,747 | 389,898 |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706,720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34,001천원이 발생하고, 56,747천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883,974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389,898천원, 보증금채권이 12,474천원, 융자금 채권 4,481,602천원이며,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VI 채무액 결산(결산서 p633)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VII 보조금 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241)

(단위: 천원)

| 구 분 | 예 산 액 |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반납액) | |
|---------|-----------------------------|-----------------------------|-----------------------------|----------------------------|--------------------------|--------------------|
| 합 계 | 179,946,878 (61,672,925) | 178,597,676 (61,269,668) | 152,073,528 (47,261,963) | 19,427,613 (10,652,226) | 7,096,535 (3,355,479) | |
| 일 반 회 계 | 174,541,965 (61,645,936) | 173,192,763 (61,242,679) | 147,059,395 (47,255,761) | 19,070,955 (10,652,226) | 7,062,423 (3,334,692) | |
| 특별회계 | 발전소 주변지역 | 507,000 | 507,000 | 144,332 | 356,668 | 6,000 |
| | 수질개선 | 4,897,913 (26,989) | 4,897,913 (26,989) | 4,869,801 (6,202) | - | 28,112 (20,787) |

※ 군비부담액은 61,269,668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4.3%에 해당함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16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78,597,676천 원으로 예산액 179,946,878천원 대비 99.2%이고, 집행액은 152,073,528천원으로 예산액의 84.5%이며, 19,427,613천원이 이월되고 7,096,535천원을 반납하였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61,242,679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5.4%에 해당됨.

VIII 기타의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회복,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으로 계속 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자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 예산현액이 577,120백만원이고 이월사업비가 76,85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9,037백만원으로 32.2%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자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523,6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30백만원 (1.7%)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88,704백만원(36.0%)이고, 지방세는 24,112백만원 (4.6%), 세외수입은 16,133백만원(3.0%), 조정교부금 18,798백만원 (3.6%), 보조금 142,646백만원(27.2%)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 규모는 8,272,019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380,868원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7.6%로 열악한 실정임.
- 일반회계 세출은 369,3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132백만원 (3.7%)이 감소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22.1%), 사회복지(21.9%), 환경보호(9.7%), 국토 및 지역개발(9.1%) 순으로 농업에 투자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복지 예산이 많았음.
- 그리고 집행률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50.6%, 수송 및 교통이 64.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이 부진함에 따른 요인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완벽하게 추진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후에는 대형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일반 평상시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각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지만 공모 사업이나 대동로터리 등 주요투자 사업은 지연되는 등으로 군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장기발전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대상 사업에 대해 특별 관리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무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 13,385,705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52,674천원이고, 사용액은 802,697천원으로 149,97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 기금은 모금 목표액이 있고 목표액을 달성하고 나면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을 하여야 하나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고도 대다수 기금을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채권 관리에 있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은 기일 내에 회수조치 해야 하나 생활안정기금의 기일도래 채권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어, 군 기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생활안정기금 채권연체자에 대하여는 조기 회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